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14-2  
(공개)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2025. 9. 10.

관 계 부 처 합 동

## 1 추진 배경

-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피해 입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
  - \* '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23년 기준), 표본 4천개사 대상 모수(57,148개사) 추정값
  -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順
  -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 수준
    - \* 피해기업 평균 청구액 약 8억원 → 법원 평균 인용액 1.4억원('24, 판결문 분석 연구)

## 2 보완 필요 과제

### ① 기술침해 피해 입증 곤란

-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은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사실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 한계 발생
- 또한 기술분쟁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으나, 관련 전문가 정보는 불충분

### ② 피해대비 낮은 손해배상액

- 중소·스타트업이 투자유치·거래제안 등 거래 전 교섭단계에서는 매출을 전제로 현행 법률이 정한 방식\*의 손해액 입증에 애로
  - \* 일실손해, 합리적 실시료, 침해자의 이득액
- 피해기업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출 비용 대비 과소배상받는 실정

### ③ 기술보호 예방·관리 역량 취약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점수)은 대기업의 60~70% 수준\*  
\* 기술보호역량 점수 : 대기업 74.5, 중견기업 69.0, 중소기업 49.0('24, 기술보호 실태조사)
- 기술보호 전담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37.4%\*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관리 역량 부족  
\* 기술보호 전담인력 보유 : 대기업 60.7%, 중견기업 50.6%('24, 기술보호 실태조사)

### ④ 기술침해 사건처리 비효율

-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기부·특허청·공정위,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기관별 적용 대상·규정이 상이
- 피해기업은 여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행정기관도 동일 사건을 중복조사 하는 등 비효율 발생

## 3 중점 추진 과제

### ①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 권한 신설 **중기부·공정위·특허청**  
\*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익명제보 도입 및 직권조사 강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20억원) 도입 등 제재 수위 강화 **중기부·공정위**
-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참여 제한 강화 **중기부**
- 영업비밀 유출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방지 강화 **산업부·특허청**

### ② 손해배상액 현실화

- 기술개발 비용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되도록 산정기준 개선 추진, 기술개발비 관련 산출 결과의 법원 제공 **중기부**
- 법원의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및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운영 **중기부·특허청**
- 각 기관별 별도 관리하고 있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포털형태로 관리·제공 **중기부**  
\* 기술의 시장성, 가치평가 동향, 기술개발 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

###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부처 합동 설명회\* 연 5회 개최, 전광판·라디오 광고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를 통한 기술보호 인식 제고 관계부처
- \* 광역별 1회 이상 개최 /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국정원 등
- 대상별·부처별 맞춤형 컨설팅, 기술보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기부 · 산업부 · 공정위 · 특허청
- 대기업 수준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 정부출연 10억원 이상 R&D 과제 조기경보 모니터링 강화 중기부

#### <핵심기술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 업무흐름도>



- 중요 자료 원본 증명 대상 확대, 기술분쟁 발생 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보급 확대 중기부 · 특허청

###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운영, 기술분쟁 관련 민원 통합 신고·접수 창구 신설 관계부처
- 기술경찰 수사체계 고도화,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법원·수사 연계 확대,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기관 공조 강화 중기부 · 특허청 · 경찰청
- 기술분쟁 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신설, 원격조정 제도 확대 중기부 · 특허청

\* 분쟁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조정 사건 중심

# 참고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요약표

## 용이한 입증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  
법정의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자료제출 명령권  
(법원 → 행정기관)  
+  
자료제공 확대  
+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 상향

###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입증 및 처벌 강화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 강화  
(익명제보 및  
직권조사 도입)  
+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  
+  
영업비밀·국가핵심  
기술 유출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충분한 피해보상

### 기술개발비 인정

기술개발 투입비용도  
기본 손해액으로  
인정토록 제도 개선

### 기술개발비 제공

법원·기업 요청  
↓  
연구개발비 정보  
제공  
↓  
기술개발원가를  
손해배상에 활용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 데이터 통합 제공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  
영업비밀 경제적  
가치 모델 개발·활용

손해배상액  
현실화

## 예방 역량 강화

### 기술보호 역량강화

범부처 설명회 등  
기술보호 홍보강화  
+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자문  
+  
하도급 기술자료  
비밀보호 인식개선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  
국가핵심기술 보호  
환경 조성

###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  
핵심기술 조기경보  
모니터링 확대  
(정부출연 10억원 이상  
R&D 과제)

###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원본증명 및  
기술임치 활성화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보급 확대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행정 효율화

### 범부처 대응단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신설

### 기술분쟁 신문고

기술분쟁 민원을  
통합 신청·접수할 수  
있는 창구 신설

###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기술경찰 수사체계  
고도화  
+  
수사 패스트트랙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법원·수사 연계 확대

###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직권조정,  
1인 조정부 신설  
+  
원격조정 제도 확대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는 소송 환경,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 제공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경제 정의의 실현

# 순 서

|                            |    |
|----------------------------|----|
| I. 추진 배경 .....             | 1  |
| II. 추진 방향 .....            | 6  |
| III. 세부 추진과제 .....         | 7  |
|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 7  |
| 2. 손해배상액 현실화 .....         | 10 |
|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 13 |
|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  | 15 |
| IV. 추진일정 .....             | 18 |

# I 추진 배경

## 1 정책현황

-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18.2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18.2) 주요 내용>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이내로 강화
-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전환·완화
- 중소기업 기술,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 행정조사 도입 등

- 이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피해 입증, 손해 산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제도적 진전

- 대·중소 간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에 NDA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등 기술보호 장치 강화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 ('22.2)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확대(3배→5배), 입증책임 완화, 금지청구권 신설(상생협력법('24)·하도급법('25)) 등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 징벌적손해배상 : 3배 하도급법('11),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19), 산업기술보호법('20)  
→ 5배 하도급법·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24)

입증책임 전환(완화) : 특허법 ('19), 상생협력법 ('22)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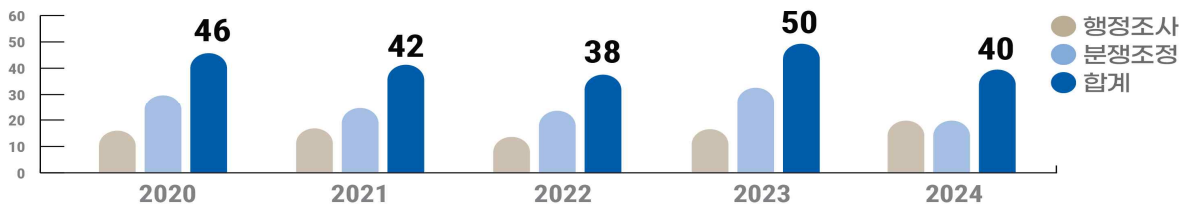
| 구 분    | '16년   | '22년           | '24년           |
|--------|--------|----------------|----------------|
| 비밀유지계약 |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도입 |                |
| 피해입증   |        | 입증책임전환 제도      |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
| 손해산정   |        |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 손해액 산정지원사업     |
| 손해배상   | 손해배상제도 | 징벌적손해배상 (~3배)  | 징벌적손해배상 (3→5배) |
| 피해확산방지 |        |                | 금지청구권          |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 '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23년 기준), 표본 4천개사 대상 모수(57,148개사) 추정값

○ 아울러, 행정조사·조정신청도 연간 40~50건으로, 피해가 지속 발생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접수 현황(중기부)>



□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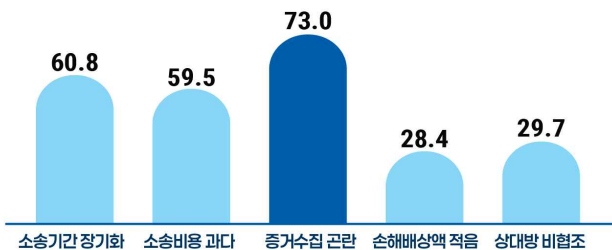
\* '25년 특허청·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이며, 기술 개발에 투입한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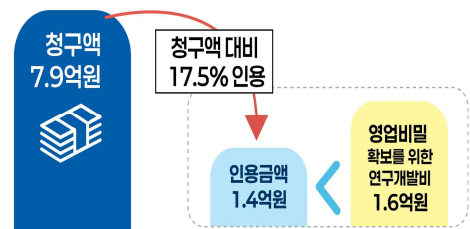
\* '24년 판결문 분석 연구('19~'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 판결문 907건 대상)

\*\* 외부유출방지 정보보유 기업의 연구개발비 1.6억원, '23년 영업비밀보호 실태조사(특허청)

<기술탈취 대응과정의 애로사항>



<인용금액과 평균 기술개발비 비교>



○ 다만, 최근 기술침해 피해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23년 신설)을 통해 손해액 산정값의 인용 현실화 가능성 확인

\* 피해기업이 사업 신청 시 전문성 있는 산정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이 손해액 산정

**참고** 손해액 산정 지원 사례



· A社 손해배상소송 1심 손해액 산정 청구액 전액(794백만원) 인용('24.12)  
 ※ 기술보증기금이 한계이익율과 침해자의 침해기술 관련 매출액에 근거하여 손해액 산정

## 2

## 보완 필요 과제

### 1 기술침해 피해 입증 곤란

-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사실 입증 등이 어려워 피해구제 한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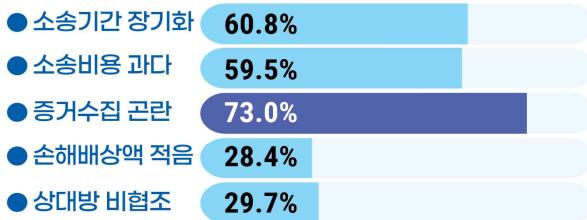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현실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법원에 제출 가능한 증거가 세금계산서 뿐(기술보호 연구회 참여 A 변호사, '25.4)

- 또한 기술분쟁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나, 관련 전문가 정보는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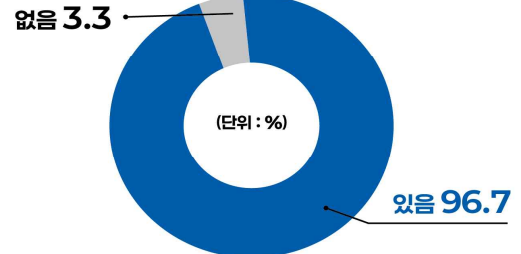
#### <기술침해 소송 과정 주요 애로사항>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 (복수응답, %)



####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성 설문결과>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성



\* 출처 :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25, 특허청·벤처기업협회)

### 2 피해대비 낮은 손해배상액

- 중소·스타트업이 투자유치·거래제안 등 거래 전 교섭단계에서는 매출을 전제로 현행 법률이 정한 방식\*의 손해액 입증이 곤란

\* 일실손해, 합리적 실시료, 침해자의 이득액

- 피해기업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출된 비용 대비 과소배상을 받는 실정

현장의 목소리

-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법원이 손해배상금액 2천만원을 정할 때 소스코드가 몇 줄인지를 세서 결정, 기술개발에 투입한 노력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함 (기술탈취 피해기업 A사,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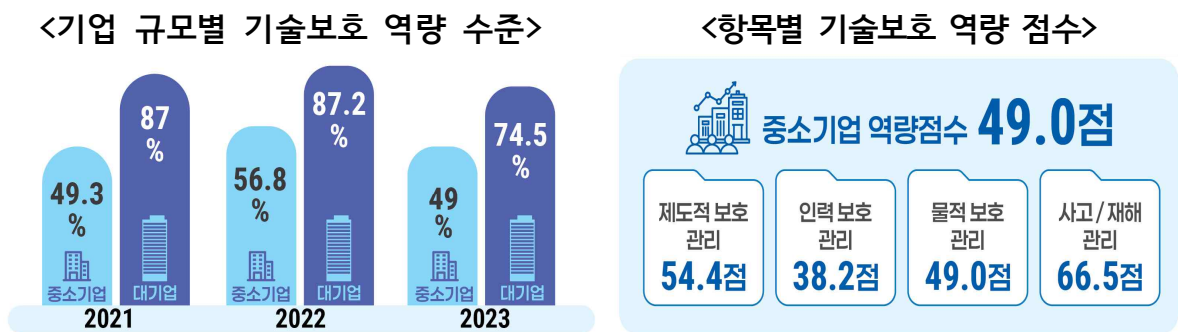
-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별, 기술 수준별 합리적 실시료 (로열티) 정보 및 시장가치 등 기술가치 산정기준도 미흡한 상황

- 또한 피해기업은 기술탈취로 인한 직접 손실 이외에도 소송비용 지출, 장기간 소송 대응\*에 따른 경영 차질로 인해 애로 가중

\* (민사소송) 1심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94.5%, (형사소송) 기술침해로부터 기소까지 37.5%가 4년 이상 소요 ('24, 판결문 분석 연구)

### 3 기술보호 예방·관리 역량 취약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점수)은 대기업의 60~70% 수준
  - 기술보호 전담 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37.4%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관리 역량 부족



\* 출처 : '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24, 중기부)

### 4 기술침해 사건처리 비효율

-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기부·특허청·공정위 및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나 부처별 적용 법령과 규정이 달라,
  - 피해기업은 동일 사건을 여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행정기관도 동일 사건을 중복 조사 하는 등 비효율 발생

#### <부처별 기술탈취 조사·수사 사건 처리 현황>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 시정권고·공표
- (공정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행위 행정조사 → 시정권고·명령·과태료·공표  
산업재산권·영업비밀 침해 수사 → 검찰 송치
- (경찰청)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수사 → 검찰 송치, 유관기관(공정위 등) 통보

## (참고) 현장의 목소리(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요약

- **일시·장소** : '25.8.1(금) 14:00~16:00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참석자** : 정부(중기·공정·특허·산업), 중소기업, 유관협·단체, 전문가 등
- **기업 및 협·단체, 전문가 의견**

- **(A사)** 기술탈취 관련 형사처벌 강화 필요, 기술보증기금 손해액 산정 사업을 통해 소송에서의 구제경험 있음. 정부사업,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B사)** 법원(판사)의 기술관련 전문성 강화 및 전문 법원 필요, 전문가 조사를 통해 법원의 증거확보 및 기술 전문성 향상 필요
- **(C사)**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려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등 제도 보완 필요
- **(D사)** 소송비용, 소송기간 부담으로 소송 포기 검토 중에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대응할 수 있었음.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과 정부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E사)** 소송과정의 어려움 대비 소송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은 매우 적음. 소송기간 단축 또는 대리인 비용의 지원 필요. 손해배상의 범위나 산정액의 향상 필요. 투자 과정에서 IR 자료의 보안도 중요

- **(중기중앙회)**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기대가 높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도 적극 찬성
- **(벤처기업협회)**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의 증거수집, 비용 문제 등이 제기됨.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의 조치 필요
- **(재단법인경청)**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신속한 도입, 공정위 과징금 등을 통한 구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직 확대 필요

- **(F 변호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시, 변호사 비용문제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필요. 기금 마련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 필요.
- **(G 변호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집중심리 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현실화,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조직 확대, 조정제도 등의 효율성 등 요구

## Ⅱ 추진 방향

### 【 목 표 】

##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

### 【 기본 방향 】

- ◇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 ◇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 ◇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 제공

| 분야                         | 추진 과제   |
|----------------------------|---|
| <b>1</b>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li> <li>2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li> <li>3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li> </ol>         |
| <b>2</b> 손해배상액 현실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 확보에 투입된 개발비의 인정</li> <li>2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li> <li>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li> </ol>          |
| <b>3</b>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li> <li>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li> <li>3 유출 방지 시스템 활성화 및 보호환경 조성</li> </ol>   |
| <b>4</b>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및 신문고 운영</li> <li>2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li> <li>3 기술분쟁 조정 제도 운영 효율화</li> </ol> |

### Ⅲ 세부 추진과제

####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 □ 전문가 사실조사 등 신설 중기부·공정위·특허청

-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피해 기업 소송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 유도

**현장의 목소리**

- 현재 법원 자료제출명령에 거부하더라도 불응에 대한 재판상 불이익이 없어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가 어려움(기술보호 연구회 참여 B 변호사, '25.4)

-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 등 도입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운영 절차(안)



-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사범위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 형해화(形骸化) 방지 장치도 마련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주요 내용

- 전문가 사실조사의 조사개시 요건,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등
- 침해자에게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 민감한 영업비밀 자료의 비공개 심리 등
- 조사불응에 대한 제재, 법원의 전문가 사실조사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 법원의 소송부담완화를 위한 당사자간 진술녹취의 증거자료 인정
- 침해입증 및 손해액 산정자료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 명령

**【 법률개정 】** 중기부「상생협력법」, 공정위「하도급법」, 특허청「특허법」,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 등

## 2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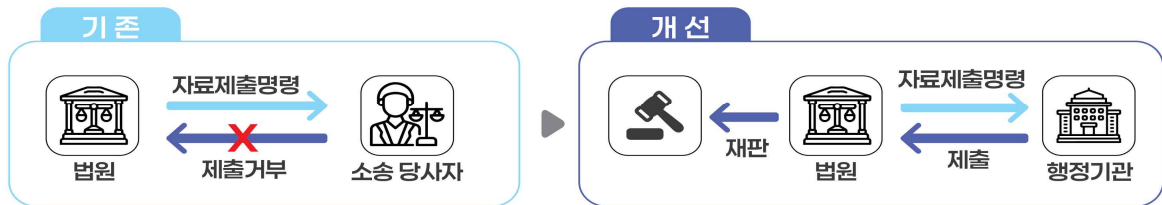
### □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중기부·공정위

-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기술침해 여부 판단 및 손해액 산정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 현행 소송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만 존재

- 행정기관이 조사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을 유도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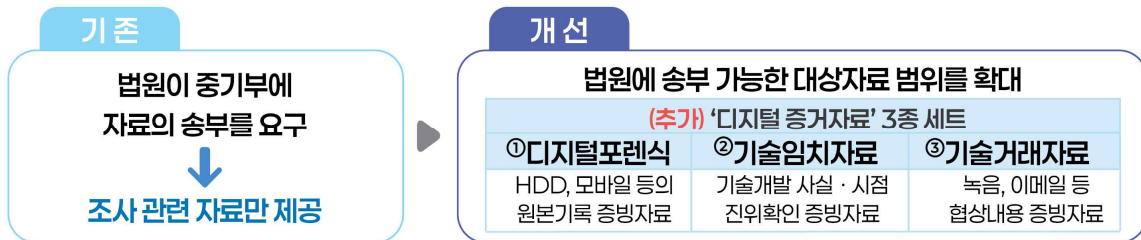


【 법률개정 】 중기부「상생협력법」, 공정위「하도급법」

### □ 법원 판단 자료 제공 확대 중기부

- (자료확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 행정조사 관련 자료 → (개선) 디지털 증거자료 일체\*로 확대

#### <법원의 자료제출 대상 개선 내용>



- (조사강화) 행정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또는 자료 미제출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향\*

\*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강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개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고시개정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포 운영규정」

### ③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 □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 강화

- (접수 단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주체를 확대(현행 피해기업 → 개선 누구나)하고, 익명 제보로도 조사 가능하도록 개편 **중기부**
- (조사 단계) 직권조사 도입 및 강화
  -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 도입 **중기부**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별 (기계, 전기·전자 등) 직권조사 강화를 통해 위반행위 적발·제재 **공정위**
- (조치 단계) 기술탈취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
  - 기술탈취 관련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시정 명령 및 미이행시 형벌 부과 근거 마련 **중기부**
    - \* **현행** 시정 권고 불이행 시 공표만 가능 → 추가 조치 불가
    - \* **개선** 시정권고 → **시정명령** → 불이행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별도의 과징금(최대 20억원) 추진 **중기부**
    - \* 중복규제를 고려, 하도급법상 위법사항(시정명령·과징금)은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
  - 기술탈취 위법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 제한 강화

【 법률개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 □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제재 강화

-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재유출\*, 해킹 등 신종 수법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 제재 강화 **특허청**

\* 불법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처벌

【 법률개정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대상을 확대 (브로커행위·미신고수출 포함) 하고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 **산업부**

\* 기술유출 벌금 상향(최대 15억원→최대 6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확대(3배→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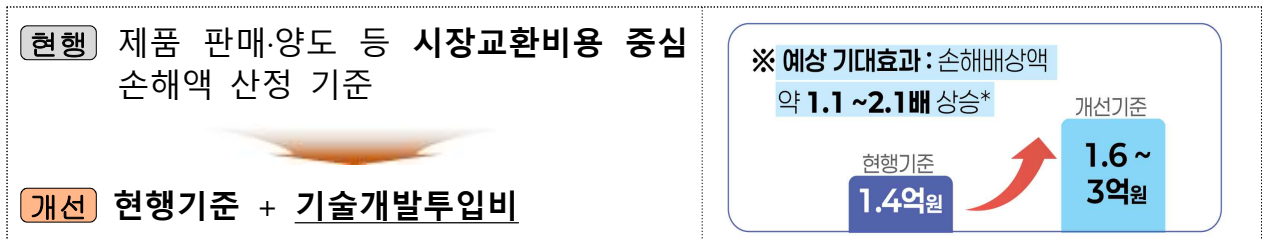
## 2

# 손해배상액 현실화

### 1 기술 확보에 투입된 개발비의 인정

#### □ 투입 개발비용이 손해액에 인정되도록 기준 개선 중기부


-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비용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도록 손해액 산정기준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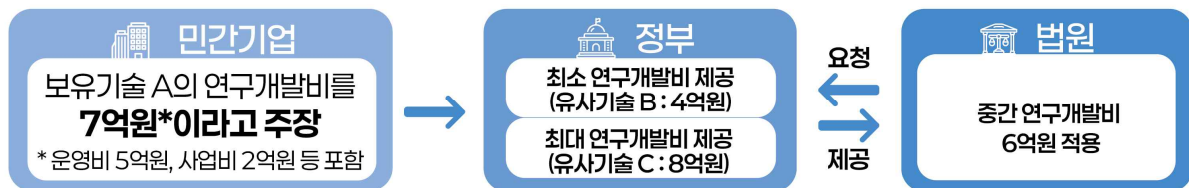
#### 【법률개정】 「상생협력법」 개정

#### □ 피해기업의 투입 기술개발비 산출 정보 제공 중기부

-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기술의 연구개발비 정보를 토대로 피해기업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여 제공\*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RCMS )를 통해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기술을 선별하고, 최소~최대 범위에서 비용 정보를 제공

####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구개발비 정보 활용 예시>



- 피해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손해배상액 판단 시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 추진



#### ■ <PPG industries vs Jiangsu Mao Glass Co. Ltd. (2022년 사건)>

- 법원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개발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액을 2배로 증가(약 2,650만 달러, 약 345억원)시켜 배상 판결 (R&D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액 산정시 반영)

## ②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중기부·특허청

-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기술거래, 기술가치 등 평가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에 촉탁하도록 근거 마련

\* 기술이전법상 기술평가 기관(기보, 신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5개 기관) 및 발명진흥법상 발명 등 평가기관(32개 기관)

**【법률개정】** 중기부「상생협력법」, 특허청「특허법」,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

###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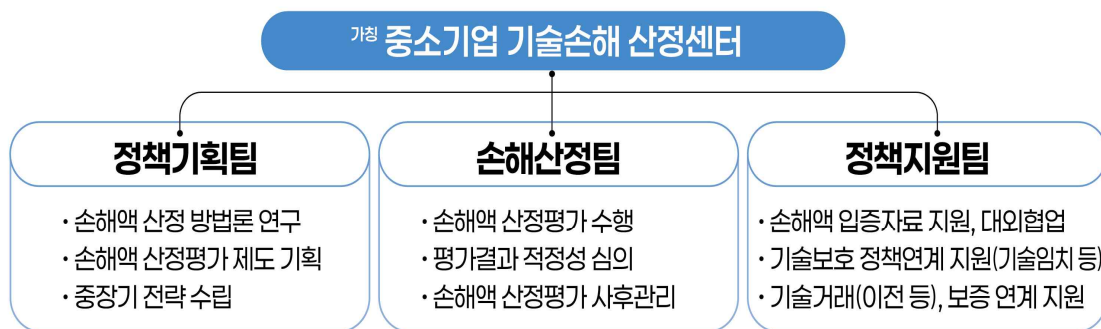
- 현행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서 손해액 산정을 지원 중인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전문센터로 확대, 전문성 제고

\* 서울중앙지법 1심('24.12월)에서 기술보증기금 산정 손해액 전액 인용

- 손해산정과 기술침해 손해소송에 필요한 개발비 산출정보 등 종합 제공할 수 있는 '(가칭)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운영

\* 국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수요의 약 50% (연간 100건 이내) 처리 예상

<가칭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운영(안)>



- 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법원 또는 조정 위원회가 손해액 산정 자료를 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 중장기적으로, 법원의 손해산정기관(공감정)으로 지정 추진

**【법률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 □ 분산된 손해액 산정 관련 데이터 수집·제공 중기부

-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 분산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보호올타리\*'로 통합 수집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및 정책 통합플랫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

#### <기관별 필요정보 보유 현황>

| 필요 정보     | 상세 내용   | 보유기관                                    |
|-----------|---|---|
| 시장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의 시장 점유율 등</li> <li>· 경쟁사 및 유사 기술의 시장현황</li> </ul>                            | 시장조사기관, 산업연구원<br>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기술개발비용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에 소요된 재료비, 인건비 및 직·간접 연구개발비용</li> </ul>  | RCMS(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br>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br>피해기업 |
| 기술가치평가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경제적 가치(DCF 등 평가모델)</li> <li>· 기술이익 기여도, 로열티율 등</li> </ul>                            | 기술보증기금(기보)<br>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
| 침해자 이익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자가 해당 기술을 통해 얻은 이익</li> <li>·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내역</li> </ul>                               | 침해기업<br>법원(소송자료), 회계법인                  |
| 소송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판례의 손해액 산정 사례 등</li> <li>· 피해입증 정보(기술임치, 거래기록 정보)</li> <li>· 형사 사건 관련 조사자료</li> </ul> | 법원<br>대·중소·농어업재단, 기보<br>검찰·경찰           |

-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침해 피해기업, (가칭)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 센터,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 소송 등에 활용 추진

#### <손해액 산정 데이터 수집·제공 프로세스 예시>



#### □ 영업비밀 경제적 가치 모델 개발·활용 특허청

-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에 활용

## 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 범부처 설명회 등 기술보호 홍보강화 관계부처

- 부처 합동설명회 및 업종·분야별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 등을 통한 기술보호 제도 종합 홍보
  - \* 부처 합동설명회 연 5회, 지역별테크노파크 연계 찾아가는 교육, 장기재직자 대상 기술보호 인식 교육 등(26년 신설)
-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유튜브\* 등 정책 홍보 수단을 다각화 하여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홍보 분야 활용

□ 대상별·부처별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관계부처

- **(중기부)**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을 통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전문가(법률, 보안)를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에 기술보호 신설 추진
  - \* 변리사 의무교육 등
-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호 환경 조성
  - 기술보호역량이 취약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보안설비 구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보유기업의 역량 강화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쏠주기 보호
    - \* 중기부(기술임치, 기술지킴서비스), 특허청(기술보호컨설팅) 등과 연계
-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 기술침해 관련 법령·제도 교육, 기술자료 비밀보호 매뉴얼 제공 등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 확대
    - \* ('24) 602개 기업 대상 → ('27) 750개 → ('30) 1,000개로 확대 목표
- **(특허청)** 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체계 구축
  - 단계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 \* ('24) 335건 → ('30) 600건으로 확대 목표

## 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중기부

-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 및 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
  -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컨설팅·교육,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사후대응 등을 맞춤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안)>

|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
|---------|-------------|-------------|-----------|
| 수준 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 바우처 한도  |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 정부보조율   | 80%(기본+30%) | 60%(기본+10%) | 50%(기본)   |

※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연계 사업법 보조율 상이 (유출방지시스템 50%, 정책보험 70% 등 별도 안내), 스타트업 10%

### □ 中企 핵심기술 조기경보 모니터링 확대 중기부

- 중기부 R&D 수행 기업 중 정부출연 10억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하여 모니터링 단계적 확대 ('25년 80개 → '30년 전체 과제)
  - \* 기업이 보유한 기술임치, 특허 등을 분석 후, 유사 특허출원 여부 수사 조사 단, 특허등록 완료 기술 등 충분한 지식재산보호가 가능한 과제는 제외

#### <핵심기술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 업무흐름도>



## 3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 □ 원본증명 및 기술임치 활성화 중기부·특허청

- 경영·기술상 아이디어 등 중요 자료의 원본증명 대상 확대\*, 기술 분쟁 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 \* 현행 영업비밀 보유사실·시점에 대한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 개선 아이디어원본 증명까지 확대 추진
  - \*\* '24년 1.7만건 → '30년 3만건으로 확대 목표

【 법률개정 】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보급 확대 중기부

- 기술보호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전산적 보호시스템 구축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보안솔루션(DRM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 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등
- 기술유출 상시 예방을 위하여 정기 구독형 디지털포렌식 사업 (가칭디지털증거점검서비스) 추진 검토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1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신설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

-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관부처 중심의 범부처 협의체 신설\*  
\* 중기부차관(長), 산업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 국장 등 참석
-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분쟁 사건의 처리, 합동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주요 정책추진 방향 논의·검토 및 조율

□ (가칭)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운영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원을 통합 신청·접수할 수 있는 창구인 (가칭)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플랫폼 운영 추진
  - 국민신문고와 유사하게 기술분쟁 민원을 신문고로 접수 받은 후 소관 부처에 배부, 민원인에게 소관 부처에서 답변·조치
- 소관 부처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조사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 착수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사건 배부 처리 흐름도(예시)>



## ②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 □ 기술경찰 수사체계 고도화 특허청·경찰청

-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전문 수사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수사 및 집중단속 실시
- 기술탈취 사건의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특허청이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자문을 실시, 중기부 등 부처 및 수사기관에 제공
  - \* 1,400여명의 전문가(심사·심판관)가 기술분쟁 핵심인 기술 동일성 등 판단 지원

**【법률개정】**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산업재산정보법」

### □ 법원·수사기관과 연계한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 처리

- 수사기관 연계 기술유출 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중기부·특허청·경찰청
  -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 사건의 추가 범법행위 의심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이관,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건협업 추진
    - \* 산기·부경법 등 위반, 기술탈취 관련 경제범죄(배임, 횡령 등) 행위 등
-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경찰청\*이 공동 현장방문 및 피해접수, 법률상담 등 현장 밀착형 초동지원 강화 중기부·경찰청
  - \* 지역별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 활용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법·수사 사건 연계 확대 특허청
  - 법원·검찰 전달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 \* 현행 서울중앙, 수원·대전지법 → 확대 대구·부산지법 등으로 확대
  - 분쟁 조정과 특허청 수사·조사 연계 프로세스 구축\*
    - \* 피신청인의 의도적인 조정 불응건에 대해 특허청 수사·행정조사로 연계 등

### ③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 □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절차 신설 중기부

- (1인 조정부) 당사자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조정예정가액 5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의 신속 처리
- (직권조정)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의 조정안을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결정
  - \* 다만, 직권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병행 도입

#### <직권조정 적용 예시>

|          |  |
|----------|--|
| 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조정판사는 당사자의 상황(합의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능 (「민사조정법」 제30조)</li> <li>• (효력) 당사자 동의시 확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li> <li>• (불복) 결정서 수령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법원 이관</li> </ul>        |
| 저작권 분쟁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한쪽 당사자가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분쟁조정 예정가액 1천만원 이하 (「저작권법」 제117조)</li> <li>• (효력) 당사자 동의시 확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li> <li>• (불복) 결정서 수령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직권조정 효력 상실</li> </ul> |

#### 【법률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 조정제도의 접근·편의성 제고 중기부·특허청

- 비대면 원격조정을 모든 사건 대상,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당사자의 편의성·접근성 및 조정 제도 활성화 제고
- 조정기일(조정회의) 차수에 구분 없이 비대면 회의 참석 가능

#### <조정제도 편의성 개선 방안>

|           |  |   |
|-----------|--|---|
| <b>구분</b> | <b>현행</b>  | <b>개선</b>   |
| 적용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이외 지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역</li> </ul>           |
| 적용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연계 사건 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건</li> </ul>           |
| 적용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조정은 대면 참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기일 구분없이 원격 참석</li> </ul> |

## IV 추진일정

| 추진 과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b>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b>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근거 마련<br/>-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li> </ul> | 중기부<br>공정위<br>특허청 | '25.下~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출명령권 근거 마련<br/>-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li> </ul>                         | 중기부<br>공정위        | '25.下~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 부과 상향 근거 마련<br/>-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li> </ul>                          | 중기부               |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권조사 도입 근거 마련<br/>-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li> </ul>                        | 중기부               |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익명 제보 도입 근거 마련<br/>-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li> </ul>                       | 중기부               | '26~   |
| <b>2 손해배상액 현실화</b>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비를 포함한 손해액 산정기준 개선<br/>- 「상생협력법」 개정</li> </ul>                        | 중기부               |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활용 유사 연구개발비 정보 산출</li> </ul>                                   | 중기부               | '25.下~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기관의 손해액 산정 지원근거 마련<br/>-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li> </ul>          | 중기부·특허청           | '25.下~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li> </ul>  | 중기부               |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비밀 경제적 가치 모델 개발</li> </ul>  | 특허청               | '25.下~ |
| <b>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b>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 합동 설명회 확대 개최</li> </ul>  | 관계부처              |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li> </ul>   | 중기부·경찰청           |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li> </ul>                                      | 공정위               | '25.下~ |

| 추진 과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확대           | 특허청     | '25.下~ |
| • 국가핵심기술 보호 환경 조성            | 산업부     | '26~   |
|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기술보호 쏠주기 지원 | 산업부     | '26~   |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 중기부     | '25.下~ |
| • 핵심기술 조기경보 모니터링             | 중기부     | '25.下~ |
| • 원본증명제도 및 기술임치 확대           | 중기부·특허청 | '26~   |
| •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확대            | 중기부     | '25.下~ |

####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                             |                          |        |
|-----------------------------|--------------------------|--------|
|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신설 및 운영   | 중기부<br>산업부<br>공정위<br>특허청 | '25.下~ |
| •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운영          | 중기부                      | '26~   |
| • 기술경찰 수사체계 고도화             | 특허청·경찰청                  | 계속     |
| • 기술자문 사업 운영 강화             | 특허청                      | '25.下~ |
| • 기술탈취 초동지원 강화              | 중기부·경찰청                  | '25.下~ |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법원·수사 사건 연계 확대 | 특허청                      | '25.下~ |
| • 조정·집행 연계를 통한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 특허청                      | '25.下~ |
| • 직권조정, 1인 조정 제도 신설         | 중기부                      | '26~   |
| • 원격조정 제도 확대                | 중기부·특허청                  | '25.下~ |